

유럽인권협약과 인권보장의 발전* **

이 우 철***

I. 서론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¹⁾은 유럽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채택되고 1953년 9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유럽인권보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국제조약이다. 유럽인권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의회민주주의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 법치주의를 보편적인 가치로 확산시켜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조직된 지역적 정치기구인 유럽평의회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유럽평의회는 1949년 영국 런던에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10개 국가 외무 책임자들의 주도로 조직되었고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가입하였으며 1990년대 민주화를 이룬 동유럽 국가들이 참가하면서 조직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현재까지 유럽평의회 회원국인 47개 국가가 모두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렇듯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은 동 협약의 사법기관인 유럽인권재판소가 1995년 *Loizidou v. Turkey* 사건의 판결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의 공공질서의 헌법적 도구’(Constitutional instrument of European public order)²⁾로 그 규범력을 인정받았고,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황폐화를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유럽인권협약은 시

* 투고일자 : 2016. 4. 30 심사일자 : 2016. 6. 20 게재확정일자 : 2016. 6. 24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유럽의 인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일부 발췌, 요약한 내용임.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유럽인권협약은 일반적으로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ECHR)이라고 약칭한다.

2) *Loizidou v. Turkey*(Preliminary Objectives) Series A no 310 (1995) para. 75.

작에서부터 현재까지 유럽에서의 인권의 인식과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처럼 유럽의 전역에 적용되는 지역적 인권보호제도의 발전은 유럽인들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의 표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서 세계인권선언에 자극을 받은 유럽인권협약은 인권의제를 전하고자 하는 연합국의 광범위한 반응으로 보여 졌고, 그 인권의제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행해진 가장 심각한 인권위반을 통해 미래에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에서 공산주의의 성장에 대한 반응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체제 전복이나 파괴로부터 유럽평의회 국가들의 보호를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비록 실제로는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원칙들이 유럽인권협약 그 자체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럽인권협약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가치들과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³⁾

II. 유럽인권협약의 연혁과 기능

1. 연혁

유럽인권협약은 2차 세계대전 후에 헤이그 의회에 모인 모든 계층과 분야의 유럽인들에 의해 제기된 요청에 따라 유럽평의회에 의해 초안되어 졌다. 1949년 여름 스트라스부르의 유럽평의회는 12개 회원국으로부터 온 10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처음으로 유럽인권협약의 초안을 위한 the Council's Consultative Assembly를 개최 하였으며 이것을 강제하기 위한 법원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하원의원이자 뉴른 베르크 재판의 검사로서 국제관계에서의 정의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지켜봐 온 David Maxwell-Fyfe가 그 주도적 구성원 중의 하나였으며 유럽인권협약의 초안을 주도하였다. 그와 함께, 프랑스의 전 장관이자 혁명운동가인 Pierre-Henri Teitgen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보고서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권리들의 리스트를 제안하고, 강화되어진 법률적 판단제도가 운용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많은 토론 후에 그 의회는 집행각료 위원회(the Council's Committee of Ministers)에 마지막 제안서를 전달하였고, 각료위원회는 그 초안을 검토할 전문가들

3) Bernadette Rainey & Elizabeth Wicks & Clare Ove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4-5.

을 구성함으로써 유럽인권협약을 위한 토대를 구성하였다.

유럽인권협약의 초안의 구성에 있어 효과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시민들의 자유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초기의 다른 유럽평의회 국가들의 전통적인 자유 부분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럽인권협약은 1950년 11월 4일 서명을 위해 공개되어졌고, 비준의 과정을 거쳐 1953년 9월 3일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평의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 동 협약의 준수가 감독되어지고 강제되어 지게 되었다. 초기 유럽인권협약의 이행위반의 판단은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맡겨졌으나, 회원국가의 증가와 효율적인 이행감독 수단의 확보를 위한 개선의 움직임으로 인해 1990년 후반에 새로운 법원의 설립이라는 절차적 개선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 단독의 사법기관으로 개선이 되었다.

2. 기능

유럽인권협약이 협약 자체의 내용을 통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⁴⁾ 유럽인권협약의 권리보호규정이 보다 포괄적이며 협약의 회원 당사국 및 국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단일의 재판소를 운영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협약 제1조를 통해 드러나는 협약 체결당사국의 기본의무를 통해 권리보호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각 협약 체결국의 인권 준중의 의무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유럽인권협약 체결 당사국들은 유럽인권협약 Section I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권리보호의 대상을 협약 체결 당사국 내에서 해당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 그 외의 협약 체결 당사국 국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⁵⁾으로 그 관할권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 보호된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의 관할권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자신의 영토 밖의 경우에도 협약 체결 당사국가에 의하여 행해진 유럽의 인권위반행위까지 적용될

4)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보호는 유럽사회권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5) Berrehab and ors v. Netherlands, Merits and Just satisfaction, application no 10730/84, 11 EHRR 322, 1988.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⁶⁾

또한,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들은 협약에서 보호되는 권리가 그들의 국내법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국의 헌법을 포함하여 국내법에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을 통합하도록 하고 있는데,⁷⁾ 그 예로서 영국의 경우 1998년 채택된 인권법이 2000년 10월 2일 발효하였다. 이처럼 유럽인권협약 당사국들은 그들의 자국 내에 특별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국내법과 새로이 채택되는 국내법이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협약의 체결 당사국들이 협약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는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사건⁸⁾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문서로서 유럽인권협약의 대상과 목적은 인권의 보호 및 보장이 실용적이고 효과적하도록 유럽인권협약 규정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유럽인권협약이 국제법의 다른 원칙들과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⁹⁾

III. 유럽인권협약의 지위

UN인권헌장 이후 발표된 다양한 지역적 인권보장의 하나인 유럽인권협약은 1953년 9월 발표된 이후 인권의 보장에 있어 유럽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의 보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과 가입 회원국의 변화에 발맞춘 추가의정서를 통해 실제적 권리의 보장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유럽인권협약은 유럽의 상당 수 국가 내에서 직접효력과 직접 적용성이 인정되고 있어 유럽인권협약상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은 국내법원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인권협약과 동 협약의 인권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인권위원회 및 유럽인권재

6) *Al-Skeini and other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55721/07, 53 Eur. H.R. Rep. 589, 2011.

7) 박노형, “유럽인권협약의 법적분석: 개론적 접근”, 『고려법학』 제4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10면.

8) *Case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14038/88, 1989.

본 사건은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반대하는 권리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반된 내용으로 살인죄(capital murder)로 사형을 언도받을 용의자의 미국으로의 인도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판결한 내용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의 위반에 대한 협약 체결당사국의 책임성을 확대하였고, 비협약 국가에 대한 유럽인권협약의 위반을 확인함으로써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체결국가의 의무를 상당히 확대하였다. 즉, 협약당사국가의 관할권의 범위의 밖에서 겪게 되는 인도의 중요성에 대한 책임이 협약당사국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재판관할의 범위를 암암리에 비협약 국가에서의 법령으로까지 확대하였다.

9) *Case Al-Adsari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35763/97, 2011.

판소의 판결이 축적됨에 따라 동 협약의 회원국들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합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개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법적 통일성을 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¹⁰⁾

또 한편으로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유럽연합의 인권보호체제의 수립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차 대전 전후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목적으로 형성된 유럽연합은 초기 공동체 규범 속에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유럽사법재판소도 초기에는 공동체 법질서의 자율원칙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개별 회원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 위반여부에 있어 공동체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다가 1970년 Internationale Handdelsgesellschft사건¹¹⁾ 이후 유럽공동체의 인권보장은 유럽공동체 법의 일반원칙에 기초를 두고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보장하게 되었다.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유럽의 인권보장의 중추적인 구심점으로 유럽인권협약의 인권보장의 요소들이 많은 유럽연합의 조약들 안에 일반원칙으로 포함되고 있다. 또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직접 원용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유럽인권협약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리스본 조약과 유럽인권협약 제14추가협정에 따라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는 기틀을 만듦으로서 유럽연합의 기관들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유럽인권협약의 범위 안에 들 수 있게 되어 향후 유럽공동체의 실질적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도 유럽인권협약이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IV. 유럽인권협약을 통한 인권보장

1. 협약의 구성

유럽인권협약은 크게 나누어보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고자 하는 주된 권리와 자유는 Section I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2조부터 제18조까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Section II는 제19조에서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판소와 재판소의 운용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Section III은 다양한 결정조항들

10) 배정생, “유럽인권협약의 사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1, 84-85면.

11) Case 11/70 Internationale Handelsgesellschaft v. Einfuhr-und Vorratstelle für Getreide und Futtermittel [1970] ECR 1125. 유럽사법재판소가 공동체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본격적으로 밝힌 판결이다.

이 포함되어 있다. 제11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Section II(제19조)는 집행위원회와 재판소를 설치하고, Section III(제20조-37조)와 IV(제38조-59조)는 각각 집행위원회와 재판소의 운영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운용기제를 기술하고 있었고, Section V에서는 다양한 결정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Section I의 많은 조항들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로 구성되어진 반면에 다른 부분에서는 기본적 권리의 배제, 예외 또는 제한을 기술하고 있다. 대체로 유럽인권협약의 제2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보호하여야 할 개인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는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는 생명권(Right to life), 제3조는 고문의 금지(Prohibition of torture), 제4조는 노예 및 강제노역의 금지(Prohibition of slavery and forced labour), 제5조는 자유와 안전의 권리(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제6조는 공정한 재판의 권리(Right to a fair trial), 제7조는 죄형법정주의(No punishment without law), 제8조는 개인 및 가족생활의 존중(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제9조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제10조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제11조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제12조는 결혼의 권리(Right to marry), 제13조는 효과적 권리구제의 권리(Right to an effective remedy), 제14조는 권리 및 자유의 향유에 있어 차별의 금지(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제15조는 긴급사항 하에서의 법률의 부분적 개폐(Derogation in time of emergency), 제16조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관한 조항(Restrictions on political activity of aliens), 제17조는 권리남용의 금지(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제18조는 권리의 제한에 있어서의 한계(Limitation on use of restrictions on rights)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규정된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는 시대별 상황과 가입국가의 수와 환경에 따라 추가되고 있는 의정서에 의해 실체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2. 추가의정서를 통한 인권보장 확대 및 절차의 보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유럽인권협약의 기본적 토대 위에 각 시대별 상황에 따른 대처와 보다 발전되고 확장된 인권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의정서가 만들어져 왔으며, 2013년 체결된 의정서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제16개의 의

정서가 추가되어 왔다. 이 추가의정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보면 하나는 기존의 유럽인권협약의 체계를 수정·개정하기 위한 제도적·절차적 의정서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호되어야 할 권리들의 확장을 위한 의정서들이다.

(1) 권리보호 확장을 위한 추가의정서

유럽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인권협약의 실질적인 권리는 유럽인권협약의 추가적인 의정서인 제1의정서, 제4의정서, 제6의정서, 제7의정서, 제13의정서에 의하여 보충되고 발전되어져 왔다.¹²⁾

제1의정서¹³⁾는 개인의 재산권,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비밀투표에 의하여 자유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제2의정서¹⁴⁾와 제3의정서¹⁵⁾에서는 각각 유럽인권재판소에 협약 및 의정서 해석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각료위원회 요청에 따라 권고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4의정서¹⁶⁾는 한 국가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와 국가를 떠날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가 자국민을 추방하거나 자국민의 입국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¹⁷⁾ 제6의정서¹⁸⁾는 사형제도의 원칙적인 철폐를 규정하고 있고, 제7의정서¹⁹⁾는 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법률에 따른 결정을 제외하고는 거주국으로부터 추방당하지 아니하며, 유죄선고를 받은 개인은 상급재판소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미 최종적인 유죄선고를 받았거나 무죄로 석방된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국가 내에서 다시는 형사 소추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의정서²⁰⁾는 유럽인권위원회에 7인의 재판부를 구성해 개인청원 심사가능성을 부여하고 있고 3인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만장일치 표결로 청원을 허용하지 않거나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선언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²¹⁾ 제9의정서²²⁾는 청원자에게 특정한 상황의 경우 재판소에 사건을 부탁할 권리를 주고 있고 제10의정서²³⁾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협약이 위반되었는지에 여부에 관

12) Philip Leach, Taking a Cas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5.

13) Adopted 20.3.1952 and Came into force on 18.5.1954(European Treaty series No.9).

14) Adopted 6.5.1963 and Came into force on 21.9.1970(European Treaty series No.44).

15) Adopted 6.5.1963 and Came into force on 21.9.1963(European Treaty series No.45).

16) Adopted 16.9.1963 and Came into force on 2.5.1968(European Treaty series No.46).

17)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6, 658면; 이석용, 「국제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249면.

18) Adopted 28.4.1983 and Came into force on 1.3.1985(European Treaty series No.114).

19) Adopted 22.11.1984 and Came into force on 1.11.1988(European Treaty series No.117).

20) Adopted 19.3.1985 and Came into force on 1.1.1990(European Treaty series No.118).

21) 이주윤, 「인류를 위한 국제법」, 한국학술정보, 2007, 65면.

22) Adopted 6.11.1990 and Came into force on 1.10.1994(European Treaty series No.140).

한 투표정족수를 단순 다수결로 변경하고 있다. 제12의정서²⁴⁾에서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3의 정서²⁵⁾는 전시와 전쟁의 급박한 위협 시점에서 자행된 범죄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있어 사형의 선고 및 집행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²⁶⁾

이처럼 유럽평의회에 속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럽인권협약이라는 인권보장의 준거의 틀 안에서 인권보장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의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다양한 의정서의 추가로 이루어가며 인권의 보장 및 발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

a. 제1의정서

제1의정서²⁷⁾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권리들은 협약 당사국들이 인권협약 속에 놓기를 동의하지 않았던 권리의 내용들로써 재산상의 평화로운 향유의 권리²⁸⁾와 교육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교육의 권리의 내용은 교육에 있어 부인되지 아니할 권리와 그들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그리고 다른 견해들과 조화되게 자신들의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교육의 특정한 질이나 특정수준의 교육의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권리가 자유선거의 권리로 정기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판결이 *Matthews v. United Kingdom* (1999) 28 EHRR 361 사건으로 유럽의회의 선거권에 관한 지브롤터인의 유럽의회 선거권부재에 관한 영국정부의 책임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b. 제4의정서

23) Adopted 25.3.1992 (European Treaty series No.146).

24) Adopted 4.11.2000 and Came into force on 1.4.2005(European Treaty series No.177).

25) Adopted 3.5.2002 and Came into force on 1.7.2003(European Treaty series No.187).

26) 이석용, 앞의 책, 250면.

27)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8) Case of Paulet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6219/08), 2014.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취업한 것으로 유죄선고를 받아 임금이 몰수 된 Mr. Paulet은 몰수명령이 4년 동안 일해서 저축한 돈의 전액이 대상이 되어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법원이 유럽인권협약에 요구하는 사유재산을 평화롭게 누릴 권리에 반하는 결과와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단순히 공익만을 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범위를 너무 좁게 판단하였다고 보았다.

제4의정서²⁹⁾는 시민들의 인신의 자의적 구속과 자유로운 이동, 추방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자유박탈의 금지 및 이동의 자유를 추가한 것이다.

즉, 제1조는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금을 금지하고 있고, 제2조는 한 국가 안에서 합법적이 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어떠한 국가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제3조는 추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들이 자신의 국적을 가지고 어떠한 국가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제4조는 외국인들의 집단적인 추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국가들 중 터키와 영국은 이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고 그리스나 스위스는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다.

c. 제6의정서

제6의정서³⁰⁾는 사형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의 가입 당사국들에게 전쟁의 시기나 전쟁이 임박한 시기에 사형제도 적용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유럽평의회 대부분의 회원국가가 이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하였으나 러시아는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았다.

d. 제7의정서

제7의정서³¹⁾는 범죄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오심의 경우 보상의 권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리고 배우자 사이의 권리와 책임의 동등성 등을 추가하였다.

제1조는 추방의 위험에 직면한 합법적인 거주민들에게 공정한 절차의 권리를 제공하게 하고 있고, 제2조는 범죄사건에 있어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3조는 오심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특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언도받거나 무죄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다시 재판

29)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ecuring certain rights and freedoms other than those already included in the Convention and in the first Protocol thereto.

30)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ncern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31)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ne bis in idem)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배우자들 간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터키는 20년 전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벨기에는 2005년에 이 의정서에 서명을 하고 2012년에 비준을 함으로서 의정서에 가장 최근에 비준한 국가가 되었으며, 영국은 아직도 이 의정서에 서명이나 비준을 하지 않았다.

e. 제12의정서

제12의정서³²⁾의 주된 내용은 차별의 금지에 관한 것으로 유럽인권협약 제14조에 서의 성·종교 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차별금지를 개정하여 차별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법적 권리의 실행과 공공기관의 법령이나 명령에 있어 광범위하고 불확정한 기준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2005년 4월에 발효가 되었지만 2009년 7월이 되어서야 17개 국가가 비준을 하게 되는데 불가리아, 덴마크, 프랑스, 리투아니아, 말타, 모나코,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다수의 국가가 아직 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영국정부는 제12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의정서의 조항의 표현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새로운 조항의 범위에 관한 새로운 사건들이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에 의해 시작되어진 권리”와 같은 구절의 표현들이 영국이 당사국이 아닌 국제적 헌장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들도 모르게 이러한 기구들에 통합되어 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 조항의 의미가 명확히 기술되어질 때까지 서명이나 비준을 거절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협약체결 국가들, 즉 영국을 포함해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럽의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들의 결정들에 의해 야기되어지는 의정서와 관련한 사항들에 있어 유럽인권재판소가 그 적용을 비준의 결여로 인해 못하게 됨으로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행위가 방해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정부는 유럽인권협약에 독립적으로 나타난 것이든 아니면 어느 한곳에 의해 부차적으로 기생해 나타난 것이든 상관없이 차별에 반대하는 규정을 유럽인권협약이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제12의정서의 위반에 대한 첫 번째의 판결이 2009년에 나타난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사건³³⁾이다.

32) Protocol No. 12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 제13의정서

제13의정서³⁴⁾는 사형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에 관한 것으로 전시의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서의 사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3의정서에 대해서는 유보 등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유럽평의회 회원국가들 중 3개의 국가가 이 의정서에 대해 빗장을 걸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이 의정서에 비준했다. 그 3개의 국가 중 아르메니아가 서명을 했으나 비준을 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아직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g. 제15의정서

제15의정서³⁵⁾는 2013년 6월 체결되었으나 회원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유럽인권협약 회원국 각국이 이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넓게 봄으로서 유럽인권재판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제15의정서는 제1조를 통해 유럽인권협약의 전문 마지막 부분에 유럽인권협약 이행의 주된 책임은 개별국가에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보조성의 원칙과 개별국가의 재량판단을 강조한 재량판단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정 재판부가 심리중인 사건의 대재판부로의 이양에 있어 당사자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변경하여, 당사자가 반대하더라도 지정재판부의 판단만으로 재판관할을 이양하게 함으로써 중요 사건처리에 있어 시간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³⁶⁾

h. 제16의정서

제16의정서³⁷⁾는 2013년 10월 체결된 것으로 비준을 위해서는 1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비준을 한 국가에만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제16의정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33) Case of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Applications nos. 27996/06 and 34836/06).

34) Protocol No. 13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ncern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all circumstances.

35) Adopted 24.6.2013 (European Treaty series No.213).

36) 김성진,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살펴본 지역인권보장체계”,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5.3, 40-41면.

37) Adopted 2.10.2013 (European Treaty series No.214).

회원국의 최고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유럽인권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유럽인권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개별국가의 최고재판소에게 권고적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권고적 의견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와 회원국 각 국의 최고재판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국가의 국내절차에서 유럽인권협약의 준수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

(2) 유럽인권협약의 체계에 관한 제도적·절차적 의정서

제도적·절차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유럽인권협약의 규정들은 다수 의정서에 의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제2의정서를 제외한 이러한 추가의정서의 수정조항들이 유럽인권협약의 원문을 수정하였다. 제2의정서는 다른 의정서들처럼 유럽인권협약의 원문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원문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다루어지며 규정되었다.

유럽인권협약의 수정에 있어서의 대표적 제도적·절차적 의정서가 제11의정서와 제14의정서이다. 이 중 유럽인권협약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은 제11의정서³⁸⁾로, 동 의정서에 의하면 기존의 유럽인권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로, 각료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던 유럽인권협약의 감독 및 재판 기능의 중첩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1959년 유럽인권협약 제1조에 기초하여 설립된 비상설 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를 1998년 상설재판소로 변경하여 인권관련 제소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이다. 이 의정서를 통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강제적 재판관할권을 모든 회원국가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의 피해에 대해 직접 개인이 제소할 수 있는 개인청원을 허용하여 절차상으로도 인권보호의 내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기존에 각료위원회가 가졌던 준사법적 기능을 폐지하고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집행에 대한 감독 및 재판소 판결의 준수의무를 동 위원회에 두고 있다.

2000년대 공산주의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에 따른 동유럽 국가의 대거 유입으로 인하여 기존 유럽평의회 회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유럽인권협약 체결국도 증가하였으나, 새로이 유입된 동유럽 국가들에 의한 인권위반 사건 관련 청원의 폭주에 따라 유럽인권체제의 효율성과 재판소의 권위상실 등의 심각한 위험이 야기 되었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한 번의 제도적·절차적인 제14의정서³⁹⁾의

38) Adopted 11.5.1994 and Came into force on 1.11.1998(European Treaty series No.155).

39) Adopted 13.5.2004 and Came into force on 1.6.2010(European Treaty series No.194).

추가를 통해 유럽인권협약의 준수 및 인권보장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2010년 6월에 발효된 제14의정서의 변화를 통해 달라진 점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업무부담의 경감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와 각료위원회의 다양한 판결이행 수단의 확보 그리고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의 승인이다. 먼저, 유럽인권재판소와 관련해서는 제11의정서에 비해 개인청원에 있어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부여하였고, 3인의 재판부에 의해 행해지던 신청사건의 결정을 1인의 재판부의 신설을 통해 신속성을 부여하는 등 유럽인권재판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로 각료위원회의 감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료위원회가 중국판결의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유럽인권재판소에 중국판결의 의미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치적 압력과 설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각료위원회에 재판소의 도움을 통해 다양한 수단의 가능성을 확보해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14의정서에서 오랜 시간 토론의 대상이었던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럽연합이 하나의 법인격체로서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기 함으로서 유럽연합의 기관들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절차적 의정서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획득되어야 한다.

V. 유럽인권협약의 실효성 확보 수단

유럽인권협약의 협약 내용에 대한 조약 당사국들의 의무이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갈등이 야기되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몇의 기구를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954년 설립된 유럽인권위원회이고 두 번째가 1959년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이다. 이 중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설립되어진 초국가적인 국제 법원으로 계약 당사국들이 유럽인권협약과 추가의정서에 명기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인권조항들의 위반사항에 대해 신청인들의 고소나 청원이 있으면 사실 관계를 심리하여 판결을 함으로서 유럽인권협약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규정을 절차적인 면에서 보장하는 유럽의 최고재판소이다.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에 따르면 유럽인권협약은 상호적이며 양자적인 약속을 통해 ‘집단적 이행’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의무를 창설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을 목적론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하여 회원 국가들 간에 있어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객관적 이행을 담

보하고 있다고 한다.⁴⁰⁾

유럽인권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는 초기에는 비상설기구의 형태로 유럽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두 기관에 의하여 개인들과 기관들의 권리인 청원의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제11의정서의 체결에 따라 비로소 유럽인권협약 위반관련 사건의 판단 및 판결의 책임이 유럽인권재판소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유럽인권재판소는 설립이후부터 동 재판소의 판단을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의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국가를 구속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시대 상황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지는 후속 의정서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협약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협약체결국 국민들의 인권보호 범위를 확장해 오고 있다.

1. 제11의정서 발효 전의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이 발효된 것은 1953년의 일이었지만 유럽인권재판소가 설립되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흐린 뒤 1959년에야 출범할 수 있었다. 이 당시 협약 당사국의 개인들은 현재와 같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직접 제소할 수 없었고 오직 유럽인권위원회나 재판소의 재판관할을 인정한 가입국가만이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었다. 즉, 가입국가에 관한 강제관할권이나 개인들의 직접제소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초기에는 불가능하였고, 현재와 같이 상설된 재판소의 형태도 아니었다. 당시에는 가입국의 인권위반사건에 관하여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의 세 가지의 기관에 의해 관련 사건의 판단이 행해졌으나, 세 기관들 간의 중첩성의 문제 등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경우 회원국 각국의 대표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권위반사건에 대해서 일부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하기도 하였다.

유럽인권위원회는 가입국의 유럽인권협약 위반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을 할 수 있었으나 강제력 있는 사법판단을 하지 못하였으며, 사건의 접수 방법에는 국가 간 청구와 개인 청구가 있었으나 대다수의 사건이 유럽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의견 표명기능에 의해 처리되었다고도 볼 수 있었다. 다만, 개인 청구에 있어서도 협약 당사국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뿐이어서 그 영역이 상당한 부분 제한되어 있었다.

40) 박노형, 앞의논문, 8면.

이 당시의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위원회가 회부한 사건이나 재판소의 재판관할을 인정한 당사국이 청구한 사건만을 처리하였으며⁴¹⁾, 재판관할의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소가 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고⁴²⁾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을 발할 수 있었다.⁴³⁾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판결문은 이것의 집행을 위해 각료위원회로 송부되게 되는데,⁴⁴⁾ 각료위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제11의정서와 제14의정서 발효 후 유럽인권재판소의 변화

제11의정서 발효이전까지 인권관련 사건의 관할권은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 담당되어져 오고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이 두 개의 기관이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강제적인 관할권을 가진 하나의 사법기관을 설립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대처를 위해 1988년 제11의정서에 의해 유럽인권재판소가 하나의 상설재판소로서 강제관할권을 가지는 기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1989년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동유럽 회원국의 급속한 증가가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서유럽국가에 비해 인권의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 동유럽주민들의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한 직접청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개혁이 제14의정서로 나타나게 되었다.

(1) 제11의정서에 따른 변화

제11의정서는 유럽인권협약의 조직과 시스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로 양분화 된 재판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럽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재판소의 설립을 가져온 것이다. 1980년 대 후반부터 유럽인권협약의 새로운 감독체계에 대한 개혁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새로운 회원국가의 유럽평의회에 가입에 따른 청원의 수의 증가와 유럽인권협약 가입국가의 증가에 따른 유럽인권위원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면서 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재판소는 비상임이던 재판관을 상임으로 규정한 상설재판소이며 동 의정서에 기초하여 재판관의 수를

41) 구 협약 제44조, 제48조.

42) 구 협약 제49조.

43) 구 협약 제50조.

44) 구 협약 제54조.

협약체결국의 수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개인청원의 권리에 관한 선택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유럽인권재판소에 개인들의 직접적인 신청인 개인청원을 허용하였으며, 재판소의 강제적인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즉, 지금까지 유럽인권위원회, 각료위원회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로 나누어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을 판단하던 구조가 제11의정서에 의해 유럽인권재판소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the new Court")로 변경되게 된 것이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의 감독 및 이행을 위한 각료위원회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유럽인권협약의 회원국가에서 발생한 인권위반 사례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판결문이 각료위원회로 송부되어지고 해당 당사국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며, 각료위원회는 동 판결의 이행을 감독하게 된다. 다만, 이전의 각료위원회와는 달리 제11의정서 하에서는 각료위원회가 어떠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2) 제14의정서에 따른 변화

2010년 발효된 제14의정서⁴⁵⁾는 제11의정서를 따른 것으로 제11의정서에 의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강제관할권과 개인청원의 허용되게 되고, 동부유럽의 국가들의 대거 유입과 함께⁴⁶⁾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이 됨에 따라 인권위반사건의 급증에 따른 유럽인권협약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제14의정서에 따른 유럽인권재판소의 대표적인 변화는 첫째로, 1인 재판부의 신설과 3인 위원회의 권한의 확대를 통하여 유럽인권협약 위반 사건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도로 유럽인권재판소의 효율성을 보다 개선시킨 것이다. 또한, 청구인 적격, 보충성의 원칙, 국내 최종구제절차 후 6개월 이내의 청구기간 등 적법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동일한 회원국가가 이전에 제기한 동일한 유사한 사건들을 걸러내는 필터링의 기능을 추구하여 재판소 업무의 경감을 추구하였다. 더구나 신청자가 현저한 불이익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건을 다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음으로 재판소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판결이 사용되어 지는 때는 인권위반 신청에 대한 신청자의 실익에 대한 조사가 행하여져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고려되지 않을 때와 신청의 주된 문제가 이미 자국의 법원에 의해 고려되어졌을 때에 해당

45) Protocol No. 1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mending the control system of the Convention.

46) 1990년 헝가리, 1991년 폴란드, 1992년 불가리아, 1993년 6개국, 1994년 1개국, 1995년 5개국, 1996년 2개국, 2001년 2개국, 2002, 2003, 2004, 2007년 각 1개국이 가입하였다.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집행 및 이행의 감독에 있어 각료위원회에 의한 판결의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제14의정서에 의해 소개되어 졌고, 이를 통해 동 위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판결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심지어 특정 국가에 있어 이전 판결 불이행에 대해 회원 국가를 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게 되었다.

VI. 결 론

유럽인권보호제도의 핵심인 유럽인권협약은 2차 세계대전 후 인권과 자유의 수호를 갈망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지역적 인권협약체인 유럽평의회 회원 국가들의 창조물이다. 유럽인권협약은 협약 당사국들에게 협약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제1조에서 ‘자신의 관할권내의 모든 사람에게’ 이 권리를 지킬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인적·지역적 범위를 넓혀 유럽인권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폭넓은 인권보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협약의 토대위에 보호되어야 할 권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인권협약체계의 보다 효율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추가적인 의정서를 두고 있다.

또한, 유럽인권협약의 이행의 관리 및 인권위반의 감독과 판단을 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유럽인권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각료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였지만, 여러 사정에 따른 유럽인권협약 회원국의 증가와 동 협약의 위반사안에 대한 개인적 청원의 허용 등 보다 효율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기존의 중첩적 구조였던 인권위반의 관리·감독·판단의 기능을 상설재판소인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을 통해 실효성 확보를 담보하였고 동 재판소의 다양한 해석을 통한 인권의 보호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나 독일 기본법의 부분들처럼 유럽인권협약의 초안도 개괄적으로 초안되었기에, 법률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인권협약의 원칙들은 강제력이나 확정력을 가질 수 없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있어 그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판소에 의한 폭 넓은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 이행의 담보로서의 상설재판소로서의 유럽인권재판소의 역할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역적 인권보호조약으로서의 유럽인권협약은 그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인권보호의 도구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록 각 협약 체결 국가들의 사정에 따라 권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보이겠지만 인권보호라는 기본적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Bernadette Rainey & Elizabeth Wicks & Clare Ove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Maartje de Visser, *Constitutional Review in Europe—A Comparative Analysis*, Hart Publishing, 2014.
- Philip Leach, *Taking a Cas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6.
- 이석용, 「국제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 이주윤, 「인류를 위한 국제법」,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성진,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살펴본 지역인권보장체계”,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5.
- 박노형, “유럽인권협약의 법적분석: 개론적 접근”, 「고려법학」 제4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 배정생, “유럽인권협약의 사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1.